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윤영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-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에 따라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오산시 공공 부문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융합 및 행정혁신 방향을 정립하고,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개선과 대외협력으로 오산시 미래도시 구상 및 신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함
- 이에 따라 행정혁신 및 글로벌 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와 국가 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글로벌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계 행정 실증 모델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위탁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행정 효율화와 국제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신설(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)
- 시행계획 작성시 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 포함 신설(안 제5조제2항 제8호)
- 오산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의2)
- 오산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센터의 사무 위탁 근거 신설(안 제5조의3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7월 22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정책지원팀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56
 - 전자메일 : csm0101@korea.kr

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은 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·활용하여 단순·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, 시민에게 향상된 지능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오산시 인공지능 정책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, 해외 지방자치단체, 국제기구 등과 정보 교류 및 국제협력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 효율화 및 국제협력·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
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접목,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센터(Osan Global AI Initiative Center)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무를 수행한다.

1.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선도 기업·대학·연구기관·국제기구 등과의

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

2. 오산시 특화 인공지능 기술 연계·접목 및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설계·도입 지원

3. 그 밖에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5조의3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데이터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④ (생략) <신 설> <신 설>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시장은 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·활용하여 단순·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, 시민에게 향상된 지능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⑥ 시장은 오산시 인공지능 정책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, 해외 지방자치단체, 국제기구 등과 정보 교류 및 국제협력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제5조(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(생략)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 <신 설> 8. (생략) <신 설>	제5조(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 효율화 및 국제협력·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 제5조의2(글로벌 인공지능 선도

<신 설>

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접목,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센터(Osan Global AI Initiative Center)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무를 수행한다.

1.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선도 기업·대학·연구기관·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
2. 오산시 특화 인공지능 기술 연계·접목 및 시민 체감형 공공 서비스 설계·도입 지원
3. 그 밖에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5조의3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

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데이터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